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1. 20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임동현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관리 업무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위생 관리 업무 위탁을 전부에서 일부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화장실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 중 “화장실의 자동 물 내림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” 를 “자동 물 내림 장치 설치” 로, 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” 를 “규정 준수” 로 변경함(안 제5조)
- 화장실 위생 관리 업무의 “일부 또는 전부” 를 “일부” 로 변경함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화장실 위생 관리 업무 위탁을 ‘일부 또는 전부’ 에서 ‘일부’ 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은 현재 청소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화장실 위생관리를 전부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
이므로 현행 조례와 같이 화장실 위생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
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○ 현재 공립학교 중 청소원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중학교 38개교,
고등학교 9개교이고, 사립학교는 31개교가 화장실을 위탁 관리 하고
있음.

※ 사립학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만 조례의 적용 대상임.

○ 이러한 도내 각급학교의 화장실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화장실의
위생 관리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일부만
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조례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